

[변경 대비표]

■ 변경 집합투자기구 및 변경 서류

펀드명	BNK BNK주주가치액티브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
변경서류	집합투자규약
변경사유	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조정 - 환매조건부매수 문구 추가
효력발생일	2024년 03월 07일

■ 변경대비표

항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제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의무)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	① (생략)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,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,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를 수행한다. ③ (생략)	① (현행과 동일)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,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,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<u>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·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</u> ,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를 수행한다. ③ (현행과 동일)
제15조(투자대상자산 등)	환매조건부매수 문구 추가	① (생략) ② 제1항의 ---(생략)--- 운용할 수 있다. 1. ~ 2. (생략) 3. <신설>	① (현행과 동일) ② 제1항의 ---(생략)--- 운용할 수 있다. 1. ~ 2. (현행과 동일) 3. <u>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. 이하 같다)</u>
제18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	오기 정정	① 다음 ---(생략)--- 한다. 1. ~ 2. (생략) 3.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(<u>회계기간</u> 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) 4. ~ 5. (생략) ② ~ ③ (생략)	① 다음 ---(생략)--- 한다. 1. ~ 2. (현행과 동일) 3.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(<u>계약기간</u> 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) 4. ~ 5. (현행과 동일) ② ~ ③ (현행과 동일)
제32조(투자신탁분배금)	자본시장법	① ~ ③ (생략)	① ~ ③ (현행과 동일)

<p>의 지급)</p>	<p>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</p>	<p>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<u>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</u> 인도받은 투자신탁분배금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</p>	<p>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<u>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</u> 인도받은 투자신탁분배금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</p>
<p>제43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</p>	<p>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</p>	<p>① 투자신탁을 ---(<u>생략</u>)--- 보고하여야 한다. 1. ~ 2. (<u>생략</u>) 3.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.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p> <p>② 투자신탁을 ---(<u>생략</u>)--- 보고하여야 한다. 1. ~ 4. (<u>생략</u>) 5.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6. (<u>생략</u>) ③ ~ ④ (<u>생략</u>)</p>	<p>① 투자신탁을 ---(<u>생략</u>)--- 보고하여야 한다. 1. ~ 2. (<u>현행과 동일</u>) 3.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(<u>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</u>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.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(<u>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</u>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p> <p>② 투자신탁을 ---(<u>생략</u>)--- 보고하여야 한다. 1. ~ 4. (<u>현행과 동일</u>) 5.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<u>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</u>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6. (<u>현행과 동일</u>) ③ ~ ④ (<u>현행과 동일</u>)</p>
<p><부칙></p>		<p><신설></p>	<p>< 부 칙 2 > (시행일) 이 투자신탁 약관은 2024년 03월 07일부터 시행한다.</p>

<끝>